

제153회 해양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

□ 일시·장소: '26. 8. 19.(수) 14:00 ~ 15:30 /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 석 자

○ 해양경찰위원회 : 김재봉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7명

○ 해 양 경 찰 청 : 기획재정담당관, 안전 소관 과장, 위원회담당관 등 8명

□ 개최 결과: 심의·의결 3건(원안의결1, 수정의결 1, 재상정의결 1)

【심의·의결 3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주 요 내 용	심의 결과	부서											
일 괄 상 정	1 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	• '26년 다수 부처 수시직제 결과 반영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1과) 및 필요인력 6명 보강 등 수정사항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제9조의2 제2항) 중 제5호를 성희롱·성폭력까지 포괄하도록 수정	수정 의결	혁신 행정 법무											
	2 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기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내 양성평등 관련 제도 및 문화의 개선 방안 수립·조정 → 변경 그 밖에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내 양성 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제도 및 문화 의 개선방안 수립·조정	원안 의결												
3	부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수상형 연안체험활동 안전기준 개선 <table><tr><th>구분</th><th>현 행</th><th>개정(안)</th></tr><tr><td rowspan="2">안전 장비</td><td>■ 탑승정원이 참가자 인원의 100% 이상인 비상구조선</td><td>■ 참가자 20명마다 1대 이상의 무동력 구조선을, 참가자 100명마다 동력 구조선을 추가로 배치</td></tr><tr><td>■ 참가자 110% 구명조끼 등</td><td>■ 무동력 구조선마다 2개 이상, 동력구조선 마다 5개 이상의 부력유지기구 등 배치</td></tr><tr><td>안전 요원</td><td>■ 기본 1명 + 참가자 10명당 1명 이상 배치</td><td>■ 기본 1명(총괄) + 비상구조선 마다 1명 이상의 안전요원 배치</td></tr></table> 재상정 사유 수상형 연안체험활동 안전기준 완화 필요성은 공감하나, 완화 수준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근거 및 전문가 의견 등이 충분치 않아 추가 검토 필요	구분	현 행	개정(안)	안전 장비	■ 탑승정원이 참가자 인원의 100% 이상인 비상구조선	■ 참가자 20명마다 1대 이상의 무동력 구조선을, 참가자 100명마다 동력 구조선을 추가로 배치	■ 참가자 110% 구명조끼 등	■ 무동력 구조선마다 2개 이상, 동력구조선 마다 5개 이상의 부력유지기구 등 배치	안전 요원	■ 기본 1명 + 참가자 10명당 1명 이상 배치	■ 기본 1명(총괄) + 비상구조선 마다 1명 이상의 안전요원 배치	재상정 의결	해양 안전
구분	현 행	개정(안)														
안전 장비	■ 탑승정원이 참가자 인원의 100% 이상인 비상구조선	■ 참가자 20명마다 1대 이상의 무동력 구조선을, 참가자 100명마다 동력 구조선을 추가로 배치														
	■ 참가자 110% 구명조끼 등	■ 무동력 구조선마다 2개 이상, 동력구조선 마다 5개 이상의 부력유지기구 등 배치														
안전 요원	■ 기본 1명 + 참가자 10명당 1명 이상 배치	■ 기본 1명(총괄) + 비상구조선 마다 1명 이상의 안전요원 배치														

첨부1

수정의결 사항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

상 정 안	수 정 의 결
제9조의2(양성평등정책담당관) 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해양경찰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해양경찰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지도 3. 해양경찰 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 4.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 수립 5.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내 양성평등 관련 제도 및 문화의 개선 방안 수립·조정	제9조의2(양성평등정책담당관) ① ----- -----. ② ----- -----. 1. ----- ----- 2. ----- ----- 3. ----- ----- 4. ----- ----- 5. 그 밖에 ----- -- 양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제도 -----
수정사유 제9조의2 제2항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사무 중 제5호는 제1호에 포함되는 사무로 해석될 수 있어 양성평등과 성희롱·성폭력을 포괄하면서 독자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 등 2건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직급을 서기관으로 한정하였는데 해양경찰 조직 문화와 업무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경찰직이 담당하는 것이 조직 내 양성평등 정책 시행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됨. 장기적으로는 총경도 임명될 수 있도록 직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보임.
 - 해경청에서도 총경을 요구했으나, 이번에 신설되는 신규 부처는 일괄 4급으로 반영되었음. 기존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운영 중인 8개 부처도 현재 4급으로 운영 중하고 있음. 향후, 총경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에 따른 업무 변화는?
 - 기존에는 양성평등정책계(3명)에서 양성평등 정책과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으나, 이번 신설로 정책과 운영을 분리하여 운영하게 됨. 정책 분야에서는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성인지 개선 등을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 분야에서는 성 관련 사건 접수, 고충 상담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 다만, 감찰 처분 및 징계는 기존과 동일하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하게 됨.
 - 함정·과출소 등에서 남녀가 장기간 근무하는 해양경찰 업무 특성상 성인지 감수성과 세대 간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번 신설을 계기로 조직 특성을 반영한 교육 및 예방정책을 강화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여성뿐 아니라 남성 피해자의 성희롱 신고도 증가하는 등 피해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정책 추진 시 최근 변화된 사례와 조직문화를 충실히 반영해주시길 바람.

○ 법령에 사용된 ‘성 주류화(性 主流化)’라는 표현은 일반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상급 부처인 성평등가족부 등에 보다 쉽고 명확한 용어 사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길 바람.

- 법령 용어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기회가 있을 때 개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람.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참가자 전원이 탑승 가능한 구조선 확보, 110% 이상의 구명조끼 비치 등 현행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함. 다만, 해외 사례에서도 국가나 단체 별로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그 중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선택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특히, 우리나라는 사고 발생 시 행정기관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사회적 환경이 있으므로 해외보다 보수적인 안전기준이 필요할 가능성도 고려해야함.

- 현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을 동원하는 등 비합리적인 운영이 지속되었음. 그에 따라 해외사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법령상 최소 안전기준을 설정한 것임.

- 사고 발생 확률이나 안전요원·구조선 배치 비율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치적으로 검토할 수는 없는지?
- 현재로선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은 어려운 상황. 안전요원 기준 등을 검토할 때 여러 기준을 두고 고민하였으나, 배치 인원 수보다는 ‘안전요원이 실제로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중점을 두었음. 안전요원이 수영 참가자 가까이에 배치되어야 실질적인 구조가 가능하므로 참가자 주변에 구조선을 배치하고, 구조선마다 안전요원을 두는 구조로 설계하였음.
- 안전규제를 완화한 이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의 규제 완화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규제 완화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전면적인 완화보다는 우선 명백하게 비합리적이고 준수하기 어려운 규정부터 개선하고, 실제 운영성과를 본 뒤 추가 완화를 검토하는 단계적인 접근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안전사고가 계기가 되어 '14년 「연안사고 예방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만큼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전규제 완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규제 완화의 수혜자가 아닌 행안부 등 재난안전기관이나 객관적 위치에 있는 전문가 등의 전문적인 의견을 추가로 확보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보강이 필요해 보임.

- 자료에 명시된 개정 배경인 ‘반복 민원 해소’와 ‘바다 활동 활성화’는 규제 수혜자의 요구에 따라 안전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현행 규정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안전확보에도 효과적이지 않아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정이 되어야함. 실제 검토과정에서 안전 규제 완화에 대한 근거가 자료에 충분히 담겨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개정 필요성과 구체적 완화 기준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재검토 결과 동일한 기준이 다시 제시될 수도 있으나, 핵심은 완화 수준에 대한 충분하고 설득력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임. 객관적인 전문가 의견, 규제 변화에 따른 비용 증감, 가능한 경우에는 외부기관을 통한 과학적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근거 자료를 준비해주시길 바람. 최근 언론에서 ‘마라톤 대회’가 늘어나면서 안전관리가 소홀해진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수상형 체험활동에서는 유사한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보임.
-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규제 개정에 맞는 절차를 거쳐 재검토하겠습니다.